

의안번호	2212243
의 퇴 인	김정재의원
회 답 일	2026.1.6.
추계번호	25B45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수질의 실시간 측정 등)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u>정화시설 및 측정망(測定網)</u> 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u>실시간으로</u> 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 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u>정화시설 및 측정망</u> 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u>실시간으로</u> 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u>실시간 측정</u>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수질의 실시간 측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하천·호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하천·호소등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수질 실시간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 및 정화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질 실시간 측정)**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법 제9조¹⁾에 따라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6,592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 개정안은 현행 수질오염도 ‘상시측정’을 ‘실시간 측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 총 1,953개 지점에 설치·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에 수질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측정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정화시설 설치)** 법 제12조²⁾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수역에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화시설의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025.11 기준)

구분	개소수 (개)	비고
공공폐수처리시설	250	70개소 설치중(신·증설 등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4,469	183개소 설치중(신·증설 등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1)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 다만, 수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 및 정화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은 설치 대상 하천 등의 크기나 유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1,953개 수질측정망에 수질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할 경우 약 2.6조원(1개소당 13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참고자료 2] 참고)

Ⅲ. 작성자

□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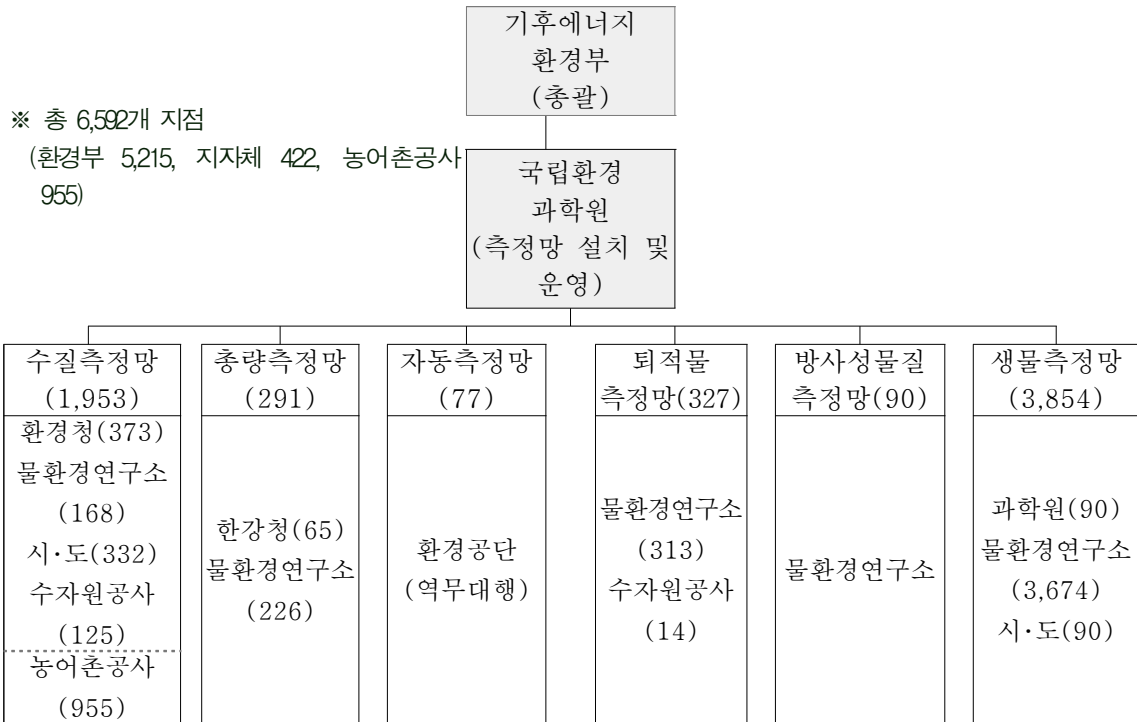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수질오염 측정 운영체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2] 자동측정망 측정소 설치 비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측정소 설치) 약 2조 6천억원 소요 예상(1개소당 단가 1,329 백만원, 전국 수질측정망 개수 1,953개)

- (설치공사) 813백만원 소요(설계비용 제외시 767백만원 소요)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공종별 산출내역(설계·공사비 포함)

(단위: 백만원)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예상 소요비용(1개소 기준)								
총사업비	설계	공사						
		시설	전기	소방	채수시설	관급자재	감리	재해예방
813	46	325	155	24	133	19	108	3

- (측정장비) 516백만원 소요
 - 측정장비 설치 세부 산출내역(장비 12대(부대장비포함), 24개 항목 기준)

측정장비 소요비용(1개소 기준)	금 액(원)	비 고
가. 측정장비	452,136,880	
일반항목(5항목)	42,027,300	수온, pH, DO, EC, 탁도 5항목
TOC(총유기탄소)	46,939,400	
T-N(총질소)	37,936,100	
T-P(총인)	37,936,100	
생물감시장치	44,257,400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141,514,800	벤젠, 톨루엔 등 9개 항목
Chl-a(클로로필 a)	22,257,400	
중금속	39,918,500	Cu, Zn, Pb, Cd 4항목
페놀	39,349,880	
나. 부대장비	59,772,040	
데이터로거	20,000,000	
자동채수기(일반)	17,296,440	
자동채수기(VOCs)	22,475,600	
다. 제경비 등	3,707,915	
출장여비	245,9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61,935	
총 합 계	515,616,835	측정장비 검사수수료 포함